의안번호	2206126
의 뢰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4. 12. 23.
추계번호	24B559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대표 등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칠 경우,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000만원(연평균 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8	8	8	8	8	40	8

주: 1. 환경부의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항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제12조의3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야 함	의무규정
	안 제12조의3(지원협의체) 신설	지원협의체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무규정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항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안 제12조의3(지원협의체) 신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주민지원사업 수립 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안 제12조의3)

○ 현행법은 관리청[1]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한강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주민대표 등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임

○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내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구성 사례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사례가 있는데, 해당 자문위원회의 2023년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 환경부 내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사례(2023년)

수계	자문위원회 구성원수(명)	자문위원회 중 민간위원수(명)	회의 운영 횟수(회)	참석비 집행 기준
한강	24	20	3	- 수당: (대면)15만원, (서면)10만원 - 여비: 5만원
낙동강	25	20	1	
금강	22	17	1	
영산강·섬진강	22	16	2	

자료: 환경부

○ 개정안은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000만원(연평균 800만원)으로 추정

- 협의회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하며, 회의를 1년에 2회 개최한다고 가정
- 연간 운영비: 20명 × 20만원 × 2회 = 800만원

[표 3]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8	8	8	8	8	40	8

주: 1. 환경부의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환경부의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